

# (학) 호서학원 정관 시행세칙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호서학원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)** 정관 제27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“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” 및 “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의 중·장기발전계획의 수립
2. 교육용 기본재산과 중요시설의 취득·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학칙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교직원의 인사·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재정운영과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제도 운용계획의 수립
7. 그 밖에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3조(보고사항)** ①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학칙·인사·재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하되, 중요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시행규칙 등의 중요사항이 사립학교법과 교육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재산과 회계

**제4조(재산의 관리)**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용재산을 보존·관

리·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기본시설의 중요한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
2.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
3. 수목의 벌채에 관한 사항
4. 이사장 명의로 된 각종 권리 또는 자산의 설치·폐지에 관한 사항
5. 교육용재산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
6. 자본적 경비지출을 수반하는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
7. 기타 재산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시설·설비의 조성)** 정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“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·설비를 위한 경비”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·설비도 포함되며, 그 시설과 설비를 조성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예산의 편성)** 학교의 장은 이사장이 정하는 예산편성요령에 따라 학교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, 이미 확정된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7조(결산)** ①학교의 장이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23조 및 같은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감사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법인의 감사는 이사장이 10일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감사실시 기간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회계감사)** ①이사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별 또는 특정한 시기에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감사자의 성명과 감사의 범위·실시기간 등을 당해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감사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수당 등 각종 경비는 당해 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소위원회

**제9조(설치)** 이사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,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심의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집행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.

1. 장기발전 심의위원회: 법인 및 학교의 중·장기발전계획의 수립·조정
2. 정책기획위원회: 중요한 정책·제도의 수립·조정, 규정심사 및 교원정책·인사 심의
3. 건축심의위원회: 학교시설의 기본계획과 건축에 관한 심의와 조정
4. 재정심의위원회: 학교의 예·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 심의

**제10조(구성)** ①소위원회는 각각 법인이사 3명, 법인감사 1~2명 외 필요시에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법인이사 및 법인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중복 배치될 수 있으며, 이사회에서 배치를 결정하고, 배치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③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법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**제11조(회의 등)** ①회의는 이사장이 요구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소위원회 위원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회 회의비 지급규정을 준용하되,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
**제12조(회의록의 비치 등)** ①소위원회 별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고, 소위원회 회의 사무 처리는 법인사무국에서 담당한다.

## 제4장 교직원 인사

**제13조(대학의 교원)** 이사장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 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사 교류로 인하여 신분보장과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은 할 수 없다.

**제14조(중·고등학교의 교원)** 이사장은 중·고등학교에 있어서 학급의 개폐 또는 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 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사교류로 인하여 신분보장과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은 할 수 없다.

**제14조의2(중·고등학교의 교감)** 중·고등학교 교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성중학교 : 2년, 중임가능
2. 대성고등학교: 2년, 중임가능

**제15조(사무직원)** ①이사장이 법인사무국장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이사장은 기구의 개편으로 폐직, 과원, 징계, 사무직원에 대한 근무환경의 개선 또는 각 기관간 상호보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학교법인과 대학 및 중·고등학교 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2항의 경우 인사교류 대상자의 직급·직위 및 근속년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, 신분보장과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은 할 수 없다.

## 제5장 법인사무국

**제16조(직제)** ①사무국에 두는 법인팀장과 감사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.

②법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법인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2. 법인 및 이사장 직인관리
3. 교직원 인사관리·재산과 회계 관리 및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4. 문서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법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

③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법인과 설치학교 및 수익사업체 감사에 관한 사항
2. 관할청 등 다른 기관의 감사·조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이사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

## 제6장 보 칙

제17조(위임규정)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0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시행일 이전에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시행일 이전에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